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2. 4. 17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 4. 10.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2. 4. 10.
- 다. 상정일자 : 제8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2.4.1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황영상 사회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의료보호법이 2001.5.24 법률 제6474호로 전문개정 되어 2001.10.1 부터 시행되면서 제명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되고, 내용도 상당부분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불금의 분할상환 규정 등 일부 불필요한 중복규정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로 변경함.

- 구청장은 설치된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생활복지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수입금출납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1) 세입 :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보조금, 마포구출연금, 대불금상환금, 전년도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 (2) 세출 : 의료급여비용의 대불금, 국고보조금 반환, 서울특별시보조금반환, 과오납금 반환, 2001.10.1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보호비용, 기타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 분임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에게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납입장소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2001. 12. 31보건복지부령 제206호)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생활복지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수입금출납원으로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회계의 수입은 국고보조금·서울특별시보조금·구의출연금 및 전년도 결산잉여금 등으로 하고, 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비용의 대불금·국고보조금 반환 및 기타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등으로 하도록 하였음.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도록 하였고,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분임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도록 하였음.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7조제5항 "급여비용의 대불신청 및 상환 방법" 에서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관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안의 3회 내지 12회의 분할 상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폐지되었기에 삭제하였음.
- 동조례(안)의 전문개정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2001.5.24 법률제6474호)으로 개정되고 의료급여법시행령(2001.9.29대통령령 제17379호)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및 폐지된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불합리해진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3조 관리·운영등에 있어 ③항중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고 할수 있는데 ②항의 생활복지국장 및 사회복지과장을 지칭하는가?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맞음.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분임회계기관 이란?
- 답변요지(조성대 생활복지국장) : 세입·세출기관을 말함.
- 질의요지(이종일 위원) : 의료급여법 제22조(독촉)에서 대불금의 체납자는 종전에는 의료보호를 정지하였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데 대불금의 체납시는 어떻게 하는가 ?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지방세법에 의하여 처리함.
- 질의요지(이종일 위원) : 의료보호 대상자는 저소득층인데 재산이 없을시의 대책은 ?
- 답변요지(조성대 생활복지국장) : 재산 및 소득을 철저히 조사하여 체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재산이 없을시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함.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2. 4 .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의료보호법이 2001.5.24 법률 제6474호로 전문개정 되어 2001.10.1부터 시행되면서 제명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되고, 내용도 상당부분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불금의 분할상환 규정 등 일부 불필요한 중복규정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함.

나. 구청장은 설치된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생활복지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수입금출납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1) 세입 :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 보조금, 마포구출연금, 대불금상환금, 전년도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2) 세출 : 의료급여비용의 대불금, 국고보조금 반환,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과오납금 반환, 2001.10.1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보호비용, 기타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라. 분임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에게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납입장소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근거법령

가. 의료급여법 (2001.5.24 법률 제6474호) 제2조 및 제21조 내지 제24조 등

나. 의료급여법시행령(2001.9.29 대통령령 제17379) 제14조 등

다. 의료급여법시행규칙(2001.12.31 보건복지부령 제206호) 제28조 등

4. 조례(안) : 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1.8.20 ~ 9.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2. 3. 15.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운영 등) ①회계는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②구청장은 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생활복지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수입금출납원으로 임명한다.

③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고 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상환금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7.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의 대불금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2001년 10월 1일 이전 발생한 의료보호비용 지급
6. 기타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제6조(수입) ①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분임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특별회계로 본다.

제3조(보호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비용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원 부

구수입

년	구 분	의료급여 특별회계	대장 번호	
세대주 성명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치료를 받은자				
상환 내용				
의료급여특별회계		년	월	분
납입금액	원			
수입일부인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포 구 청 장 (인)			

(수납은행 보관용)

영수필통지서

구수입

년	구 분	의료급여 특별회계	대장 번호	
세대주 성명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치료를 받은자				
상환 내용				
의료급여특별회계		년	월	분
납입금액	원			
수입일부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마 포 구 청 장 귀하			

(구청 수납부 소인용)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구수입

년	구 분	의료급여 특별회계	대장 번호	
세대주 성명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치료를 받은자				
상환 내용				
의료급여특별회계		년	월	분
납입금액	원			
수입일부인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포 구 청 장 (인)			

(납부자 보관용)